##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6

발의연월일: 2024. 7. 15.

발 의 자:박 정·양문석·어기구

송옥주 · 김주영 · 송기헌

안호영 · 민병덕 · 이학영

김현정 • 박해철 • 이기헌

문금주 • 부승찬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잘 관리된 문화예술기록물은 관련 연구자 뿐 아니라 예술가의 예술 창작의 기반이자 국민의 향유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럼에도 주로 민간 영역에서 생산되는 문화예술자료의 상당 부분이 단체의 영세성, 전문인력의 부재로 안정적인 수집과 보존이 어려우며, 특히 원로 예술가들이 작고하면서 소장자료를 기증할 곳이 없어 근현대 주요 예술자료들의 망실이 우려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산재된 문화예술자료의 망실을 막고 체계적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

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의3 및 제18조제11호 신설).

법률 제 호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문화예술기록의 보존과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문화예술기록물의 수집 • 보존 • 활용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4조의3(문화예술기록의 보존과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록물의 체계적인 수		
	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		
	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1. 문화예술기록물의 수집ㆍ보		
	<u>존·활용</u>		